



한국투자ISA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권유문서 및 기타 부속서류

제정 2016. 03. 14.

제1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고객과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자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 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 다. 계약기간이 5년일 것
 - 라.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말한다.
4.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7.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8.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9.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조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고객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유형별로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시한다. 이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선택하며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③ 고객은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

1.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

제8조(고객의 상담요청)

- ①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9조(고객의 운용제한)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중도해지)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정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청년

나. 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 ②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중도에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3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펀드 환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11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고객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2조(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수수료)

-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고객의 다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 방법으로 지급하며 고객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고객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에서 수수료가 지급된다.
-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하거나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채우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일임계약의 종료시 계좌 내 재산처리)

- 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계약기간(5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실
3.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 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 등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약관(별지)



1. 랩 서비스 명 : 한국투자ISA랩(본사적극/멀티)/한국투자ISA랩(본사적극/펀드)(고위험)

구 분	세 부 내 용 (원 / %)	
	본사적극/멀티	본사적극/펀드
가입(계약)금액	10,000원	10,000원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 표시)	
수수료(후취)	연 0.5 %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1,4,7,10월)로 두번째 일요일 익영업일	
연체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금융투자상품 보수(판매보수등) 별도	

랩 서비스 명 : 한국투자ISA랩(본사중립/멀티)/한국투자ISA랩(본사중립/펀드) (중위험)

구 분	세 부 내 용 (원 / %)	
	본사중립/멀티	본사중립/펀드
가입(계약)금액	10,000원	10,000원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 표시)	
수수료(후취)	연 0.4 %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1,4,7,10월)로 두번째 일요일 익영업일	
연체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금융투자상품 보수(판매보수등) 별도	

랩 서비스 명 : 한국투자ISA랩(본사안정/멀티)/한국투자ISA랩(본사안정/펀드) (저위험)

구 분	세 부 내 용 (원 / %)	
	본사안정/멀티	본사안정/펀드
가입(계약)금액	10,000원	10,000원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 표시)	
수수료(후취)	연 0.3 %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1,4,7,10월)로 두번째 일요일 익영업일	
연체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금융투자상품 보수(판매보수등) 별도	

랩 서비스 명 : 한국투자ISA랩(PB적극)(고위험)/ 한국투자ISA랩(PB중립)(중위험)/ 한국투자ISA랩(PB안정)(저위험)

구 분	세 부 내 용 (원 / %)		
	PB적극(고위험)	PB중립(중위험)	PB안정(저위험)
가입(계약)금액	10,000 원		
수수료 부과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입(계약)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탁자산 평균잔액 (√ 표시)		
수수료(후취)	연 0.5 % (후취)	연 0.4 % (후취)	연 0.3 % (후취)
수수료 납부일	분기별(1,4,7,10월)로 두번째 일요일 익영업일		
연체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금융투자상품 보수(판매보수등) 별도 본사제공 모델포트폴리오 외 운용 요청시 전환가입가능 수수료는 PB형 위험도별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별 수수료와 동일하게 차등 적용		

2. 모델포트폴리오

- 한국투자ISA랩(본사적극/멀티)/한국투자ISA랩(본사적극/펀드)

: 위험자산 70%수준(최대 100%)로 적극투자형(고위험)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

상품군	상품	위험	위험도	한투ISA랩(본사적극/멀티)		한투ISA랩(본사적극/펀드)	
				상품비중	상품군비중	상품비중	상품군비중
2종	국내 주식형, 혼합형, 기타펀드, ETF	고위험	4	17%	93%	17%	98%
	국내 채권형펀드, ETF	저위험	2	11%		11%	
	해외 주식형, 혼합형펀드, ETF	고위험	4	62%		62%	
	MMF	초저위험	1	3%		8%	
1종	RP	초저위험	1	5%	7%		
	예탁금	초저위험	1	2%		2%	2%
합계					100%		100%
위험자산(초고위험+고위험) 비중					79%		79%
MP위험(위험도)					고위험(3.5)		고위험(3.5)

- 한국투자ISA랩(본사중립/멀티)/한국투자ISA랩(본사중립/펀드)

: 위험자산 35%수준(최대 50%)로 위험중립형(중위험)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

상품군	상품	위험	위험도	한투ISA랩(본사중립/멀티)		한투ISA랩(본사중립/펀드)	
				상품비중	상품군비중	상품비중	상품군비중
2종	국내 주식형, 혼합형, 기타펀드, ETF	고위험	4	10%	68%	10%	98%
	국내 채권형펀드, ETF	저위험	2	25%		25%	
	해외 주식형, 혼합형펀드, ETF	고위험	4	30%		30%	
	MMF	초저위험	1	3%		33%	
1종	RP	초저위험	1	30%	32%		
	예탁금	초저위험	1	2%		2%	2%
합계					100%		100%
위험자산(초고위험+고위험) 비중					40%		40%
MP위험(위험도)					중위험(2.5)		중위험(2.5)

- 한국투자ISA랩(본사안정/멀티)/한국투자ISA랩(본사안정/펀드)

: 위험자산 10%수준(최대 30%)로 안정추구형(저위험)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

상품군	상품	위험	위험도	한투ISA랩(본사안정/멀티)		한투ISA랩(본사안정/펀드)	
				상품비중	상품군비중	상품비중	상품군비중
2종	국내 채권형펀드, ETF	저위험	2	60%	68%	60%	98%
	MMF	초저위험	1	8%		38%	
1종	RP	초저위험	1	30%	32%		
	예탁금	초저위험	1	2%		2%	2%
합계					100%		100%
위험자산(초고위험+고위험) 비중					0%		0%
MP위험(위험도)					저위험(1.6)		저위험(1.6)

* 상기 모델포트폴리오별 상품비중 및 상품군 비중은 상품편입 과정에서 편입상품별 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위험도는 현재 편입상품 기준이며, 편입상품 변경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상기 모델포트폴리오 외 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투자ISA랩(PB형)으로 전환해 운용 가능합니다.

본 계약권유문서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고 합니다)와 한국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투자일임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계약권유문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제97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교부합니다.

1.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가. 투자일임의 범위

- 1) 고객의 투자성향,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과 투자환경을 고려한 자산배분전략의 선택
- 2) 투자일임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업무
- 3) 투자일임자산 및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결정(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과 이행
- 4) 투자일임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및 투자정보의 제공
- 5) 그 밖의 투자일임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나.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합니다.

2. 투자일임업의 기준 및 절차

가. 회사는 상담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고객의 투자성향을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다.

나. 회사는 고객 투자성향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가능등급을 확인 후 투자가능유형에 해당하는 랩 상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투자가능등급보다 위험도가 높은 랩 상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 고객이 투자를 최종 결정하면 회사는 고객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일임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고 고객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고객은 사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의 합의로 운용조건은 변경됩니다.

마.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는 랩 유형과 고객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합니다.

바.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99조에 의한 투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교부합니다.

사.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또한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기준 및 절차

가. 가입요건

- 1) 거주자(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중 직전 과세기간(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가입요건은 가입 당시에만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3) (신규 취업, 창업자) 당해 연도에 신규취업 또는 창업한 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경우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서민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납입한도 및 만기

1) 납입한도

- 가) 연간 2천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만큼 차감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나) 납입한도 기산일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합니다.

2) 만기

-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는 5년이며, 서민형, 청년형 등 3년 의무 가입대상의 경우 3년이후 계좌만기(5년) 이전까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나) 회사는 계약 만기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ELS등의 상품 편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기시 해당 금융상품을 해지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계약 만기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의 편입에 대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원할 경우, 회사는 확인서를 징구한 후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1)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 방법(이하 “모델포트폴리오”라 합니다)을 고객에게 제시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아니하며,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릅니다.
- 3) 회사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4) 고객이 3)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릅니다.
- 5) 회사는 4)에 따른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며, 변경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회사가 정한 방법(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 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 나) 해당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 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합니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서민형)에는 가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

다. 가항 또는 나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마. 회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종도해지에 관한 사항

가. 고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고객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나) 4. 나항의1) 또는 2)(서민형)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1)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나. 회사는 가항에 따라 추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가입 부자격자에 대한 처리

가. 고객의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금융소득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계약이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정됩니다.

나. 서민형 가입 후 국세청으로부터 서민형 부적격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에 해당 계좌는 일반형으로 전환되어 계좌를 유지합니다.

다. 부적격 통보 절차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부적격 통보자의 처리

회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정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7. 투자자산운용사,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본사투자자산운용사의 성명 및 주요경력 (첨부1 참조)

나.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의 성명 및 주요경력 (첨부2 참조)

다.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8.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가. 회사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운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나.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이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 회사는 투자자산운용사 및 투자일임업무 관련자들이 관계법규 및 회사 방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물적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9. 회사와 고객의 의무 및 책임

가. 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비밀유지 의무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합니다.

2) 고객의 상담 요청의 수용 의무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합니다.

3)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가)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나) 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고객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가)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나) 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2항 제

2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자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투자일임자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6) 투자일임자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 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 2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자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8) 투자일임자산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자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9) 고객으로부터 다음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 (가)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자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자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사채권의 전환권의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및 옵션의 매수자로서의 권리의 행사인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행위
 - (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나)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라)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 (마) 고객의 손실보전 또는 위에 기재된 바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바)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나. 고객의 의무 및 책임

1) 통지 의무

가) 고객은 회사가 고객에 대해 매 분기 1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운용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는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나) 고객은 주소,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 등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 업무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내용을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3) 투자일임 결과에 대한 책임

투자일임자산은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일임과 관련한 투자 결과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일임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운용에 대한 합리적 제한 및 계약의 해지 요청

고객은 랩의 유형별 투자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및 계약의 해지를 서면 또는 전화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수수료

가. 수수료 징수기준은 약관의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라. 수수료 체계 및 징수방법

1) 후취수수료: 일별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분기별로 누적하며 해당 분기말이 속하는 익월(1,4,7,10월) 두번째 일요일 익영업일(단, 계약의 해지시 해지 전일까지의 누적 수수료를 해지 당일)에 징수합니다.

마. 수수료는 투자일임자산 중 현금에서 우선 징수합니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10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바. 마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총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총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 회사는 바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총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일임자산의 평가기준 및 통보방법

가. 투자일임자산의 평가기준

- 1) 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을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합니다.
- 2) 자본시장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시가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3) 평가의 목적은 투자일임자산의 가치를 고객에게 알려드리거나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의 결과와 현금화 정도 또는 그 가능 여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 통보방법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으로 교부합니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1)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 2)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세금 등 운용현황
- 3)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 5) 투자일임자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6)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다. 고객은 언제든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하여 회사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가. 계약의 체결

계약은 회사가 정한 금액과 법으로 정한 기간(5년)으로 고객이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과 기간으로 체결하며, 계약 시 투자일임이 가능한 재산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입니다.

나. 계약의 변경(랩 서비스 전환)

- 1) 고객의 투자성향 한도 내에서 랩 서비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 2) 회사에 운용조건 변경 요청시 본사형, PB형 서비스로 전환되며 운용주체 또한 변경됩니다.

다. 계약의 해지

- 1)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고객이 약관 및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나)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등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다) 고객이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 3)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자산을 현금 상태로 지급합니다. 만기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고객은 투자일임자산 내 보유 자산의 종류별로 현금화에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펀드의 환매수수료 등 현금화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지 않으며, 일부 보유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또는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객께서 요청하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첨부1. 본사 투자자산운용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신금호	연세대학교 경영학(학사), 한국투자증권 자산컨설팅부 부서장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랩 운용(2010.03~현재)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증권분석사
서진식	전남대학교 경영학(학사),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영팀장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랩 운용(2010.03~현재)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증권분석사
이승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학사), 한국투자증권 지점영업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랩 운용(2010.10~현재)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강연성	서울시립대학교 수학(학사),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부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랩 운용(2010.03~현재) *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권영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학사), 한국투자증권 지점영업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랩 운용(2011.03~현재)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정승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학사), 한국투자증권 선물옵션영업부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랩 운용(2011.03~현재)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김세진	이화여자대학교 수학(석사), 한국투자증권 지점영업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랩 운용(2010.05~현재)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박명호	전북대학교 수학과계정보과학부(학사), 한국투자증권 지점영업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랩 운용(2015.05~현재)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최지혜	연세대학교 경영학(학사)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랩 운용(2011.03~현재)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백수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학사)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랩 운용(2015.10~현재) *자격사항: 투자자산운용사

첨부2.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 현황

성 명	주요경력

* 위 사람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22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5호 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첨부3. 회사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임원 현황

(2016.01 현재)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결격사유 해당여부
부 회 장	김 남 구	동원증권 사장, 한국금융지주 대표이사 사장	해당없음
대표이사 사장	유 상 호	동원증권 부사장	해당없음
상근감사위원	김 석 진	금융감독원 팀장	해당없음
사외이사	배 종 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해당없음
사외이사	이 상 철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해당없음
사외이사	호바트 리 앰스타인	로드스톤 파트너스 부회장	해당없음
사외이사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해당없음
사외이사	김재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해당없음

2. 대주주 현황

(2016.01 현재)

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신청인과의 관계
한국투자금융지주	3,511만주	100	최대주주

* 대주주는 자본시장법 제 12조 2항 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를 말합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 주주여부를 기재합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한국투자ISA랩(본사적극/멀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서비스 개요

- 가입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가능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 의무가입기간: 5년(청년형 등 및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5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
- 최소가입금액: 1만원 이상(현물입고 불가) /가입한도: 연 2천만원
- 중도해지: 가능
- 매매사전통보: SMS [종목 및 수량(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 증권은 금액)통보]
- 추가입금: 가능(최소가입금액 이상)/ 일부 출금: 불가
- 자산배분유형군: 복합자산 /세부자산배분유형군: 적극투자형

2. 자산구성 및 투자 적합 고객

- 편입가능자산: 공모형 집합투자증권 (ETF포함), REITS, RP,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본 서비스에는 예금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 투자 적합 고객: 본 서비스는 고위험 등급으로 적극투자형 이상의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가입 가능합니다.

3. 운용방법

-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합니다. ('한투ISA랩 MP설명서' 상세참조)
- 위험자산(상품위험도 고위험 이상인 ETF, 주식형집합투자증권 등) 70% 수준(최대 100%)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운용하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않습니다.

4. 운용주체

- 본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별로 운용합니다.

5. 수수료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성과수수료
없음	연 0.5% (분기별 후취)	없음	없음

- *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 부과됩니다.
- *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랩 계약 변경(랩 서비스 전환)

- 고객의 투자성향 한도 내에서 랩 서비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 운용조건 변경 요청시 PB형 서비스로 전환되며 운용주체(본사 투자자산운용사 →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변경됩니다.(계약일 전환불가)
- 파생결합증권(사채)보유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7. 계약의 해지

- 만기 해지시: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자동 해지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현물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한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및 계좌 이전시: 현금화하여 해지 및 이전 가능합니다.
- ETF 및 집합투자증권 매도 요청시: ETF는 8시 30분 이전, 집합투자증권은 13시 이전 신청 시 당일 매도되며 기준 시간 이후 신청시 요청일의 익영업일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한국투자ISA랩(본사적극/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서비스 개요

- 가입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가능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 의무가입기간: 5년(청년형 등 및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5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
- 최소가입금액: 1만원 이상(현물입고 불가) /가입한도: 연 2천만원
- 중도해지: 가능
- 매매사전통보: SMS [종목 및 수량(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 증권은 금액)통보]
- 추가입금: 가능(최소가입금액 이상)/ 일부 출금: 불가
- 자산배분유형군: 복합자산 /세부자산배분유형군: 적극투자형

2. 자산구성 및 투자 적합 고객

- 편입가능자산: 집합투자증권 (ETF제외),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본 서비스에는 예금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 투자 적합 고객: 본 서비스는 고위험 등급으로 적극투자형 이상의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가입 가능합니다.

3. 운용방법

-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합니다. ('한투ISA랩 MP설명서' 상세참조)
- 위험자산(상품위험도 고위험 이상인 주식형집합투자증권 등) 70% 수준(최대 100%)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운용하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않습니다.

4. 운용주체

- 본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별로 운용합니다.

5. 수수료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성과수수료
없음	연 0.5% (분기별 후취)	없음	없음

- *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 부과됩니다.
- *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랩 계약 변경(랩 서비스 전환)

- 고객의 투자성향 한도 내에서 랩 서비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 운용조건 변경 요청시 PB형 서비스로 전환되며 운용주체(본사 투자자산운용사 →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변경됩니다.(계약일 전환불가)
- 파생결합증권(사채)보유시 전환이 불가합니다.

7. 계약의 해지

- 만기 해지시: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자동 해지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현물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한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및 계좌 이전시: 현금화하여 해지 및 이전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증권 매도 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은 13시 이전 신청 시 당일 매도되며, 기준 시간 이후 신청시 요청일의 익영업일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한국투자ISA랩(본사중립/멀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서비스 개요

- 가입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가능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 의무가입기간: 5년(청년형 등 및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5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
- 최소가입금액: 1만원 이상(현물입고 불가) / 가입한도: 연 2천만원
- 중도해지: 가능
- 매매사전통보: SMS [종목 및 수량(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 증권은 금액)통보]
- 추가입금: 가능(최소가입금액 이상)/ 일부 출금: 불가
- 자산배분유형군: 복합자산 / 세부자산배분유형군: 위험중립형

2. 자산구성 및 투자 적합 고객

- 편입가능자산: 공모형 집합투자증권 (ETF포함), REITS, RP,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본 서비스에는 예금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 투자 적합 고객: 본 서비스는 중위험 등급으로 위험중립형 이상의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가입 가능합니다.

3. 운용방법

-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합니다. ('한투ISA랩 MP설명서' 상세참조)
- 위험자산(상품위험도 고위험 이상인 ETF, 주식형집합투자증권 등) 35% 수준(최대 50%)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운용하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않습니다.

4. 운용주체

- 본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별로 운용합니다.

5. 수수료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성과수수료
없음	연 0.4% (분기별 후취)	없음	없음

- *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 부과됩니다.
- *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랩 계약 변경(랩 서비스 전환)

- 고객의 투자성향 한도 내에서 랩 서비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 운용조건 변경 요청시 PB형 서비스로 전환되며 운용주체(본사 투자자산운용사 →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변경됩니다.(계약일 전환불가)
- 파생결합증권(사채)보유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7. 계약의 해지

- 만기 해지시: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자동 해지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현물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한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및 계좌 이전시: 현금화하여 해지 및 이전 가능합니다.
- ETF 및 집합투자증권 매도 요청시: ETF는 8시 30분 이전, 집합투자증권은 13시 이전 신청 시 당일 매도되며 기준 시간 이후 신청시 요청일의 익영업일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한국투자ISA랩(본사중립/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서비스 개요

- 가입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가능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 의무가입기간: 5년(청년형 등 및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5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
- 최소가입금액: 1만원 이상(현물입고 불가) / 가입한도: 연 2천만원
- 중도해지: 가능
- 매매사전통보: SMS [종목 및 수량(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 증권은 금액)통보]
- 추가입금: 가능(최소가입금액 이상)/ 일부 출금: 불가
- 자산배분유형군: 복합자산 / 세부자산배분유형군: 위험중립형

2. 자산구성 및 투자 적합 고객

- 편입가능자산: 공모형 집합투자증권 (ETF제외),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본 서비스에는 예금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 투자 적합 고객: 본 서비스는 중위험 등급으로 위험중립형 이상의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가입 가능합니다.

3. 운용방법

-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합니다. ('한투ISA랩 MP설명서' 상세참조)
- 위험자산(상품위험도 고위험 이상인 주식형집합투자증권 등) 35% 수준(최대 50%)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운용하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않습니다.

4. 운용주체

- 본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별로 운용합니다.

5. 수수료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성과수수료
없음	연 0.4% (분기별 후취)	없음	없음

- *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 부과됩니다.
- *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랩 계약 변경(랩 서비스 전환)

- 고객의 투자성향 한도 내에서 랩 서비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 운용조건 변경 요청시 PB형 서비스로 전환되며 운용주체(본사 투자자산운용사 →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변경됩니다.(계약일 전환불가)
- 파생결합증권(사채)보유시 전환이 불가합니다.

7. 계약의 해지

- 만기 해지시: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자동 해지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현물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한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및 계좌 이전시: 현금화하여 해지 및 이전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증권 매도 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은 13시 이전 신청 시 당일 매도되며, 기준 시간 이후 신청시 요청일의 익영업일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한국투자ISA랩(본사안정/멀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서비스 개요

- 가입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가능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 의무가입기간: 5년(청년형 등 및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5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
- 최소가입금액: 1만원 이상(현물입고 불가) /가입한도: 연 2천만원
- 중도해지: 가능
- 매매사전통보: SMS [종목 및 수량(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 증권은 금액)통보]
- 추가입금: 가능(최소가입금액 이상)/ 일부 출금: 불가
- 자산배분유형군: 복합자산 /세부자산배분유형군: 안정추구형

2. 자산구성 및 투자 적합 고객

- 편입가능자산: 공모형 집합투자증권 (ETF포함), REITS, RP,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본 서비스에는 예금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 투자 적합 고객: 본 서비스는 저위험 등급으로 안정추구형 이상의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가입 가능합니다.

3. 운용방법

-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합니다. ('한투ISA랩 MP설명서' 상세참조)
- 위험자산(상품위험도 고위험 이상인 ETF, 주식형집합투자증권 등) 10% 수준(최대 30%)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운용하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않습니다.

4. 운용주체

- 본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별로 운용합니다.

5. 수수료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성과수수료
없음	연 0.3% (분기별 후취)	없음	없음

- *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 부과됩니다.
- *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랩 계약 변경(랩 서비스 전환)

- 고객의 투자성향 한도 내에서 랩 서비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 운용조건 변경 요청시 PB형 서비스로 전환되며 운용주체(본사 투자자산운용사 →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변경됩니다.(계약일 전환불가)
- 파생결합증권(사채) 보유시 전환이 불가합니다.

7. 계약의 해지

- 만기 해지시: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자동 해지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현물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한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및 계좌 이전시: 현금화하여 해지 및 이전 가능합니다.
- ETF 및 집합투자증권 매도 요청시: ETF는 8시 30분 이전, 집합투자증권은 13시 이전 신청 시 당일 매도되며 기준 시간 이후 신청시 요청일의 익영업일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한국투자ISA랩(본사안정/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서비스 개요

- 가입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가능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 의무가입기간: 5년(청년형 등 및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5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
- 최소가입금액: 1만원 이상(현물입고 불가) / 가입한도: 연 2천만원
- 중도해지: 가능
- 매매사전통보: SMS [종목 및 수량(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 증권은 금액)통보]
- 추가입금: 가능(최소가입금액 이상)/ 일부 출금: 불가
- 자산배분유형군: 복합자산 / 세부자산배분유형군: 안정추구형

2. 자산구성 및 투자 적합 고객

- 편입가능자산: 공모형 집합투자증권 (ETF제외),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본 서비스에는 예금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 투자 적합 고객: 본 서비스는 저위험 등급으로 안정추구형 이상의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가입 가능합니다.

3. 운용방법

-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합니다. ('한투ISA랩 MP설명서' 상세참조)
- 위험자산(상품위험도 고위험 이상인 주식형집합투자증권 등) 10% 수준(최대 30%)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운용하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않습니다.

4. 운용주체

- 본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별로 운용합니다.

5. 수수료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성과수수료
없음	연 0.3% (분기별 후취)	없음	없음

- *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 부과됩니다.
- *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랩 계약 변경(랩 서비스 전환)

- 고객의 투자성향 한도 내에서 랩 서비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 운용조건 변경 요청시 PB형 서비스로 전환되며 운용주체(본사 투자자산운용사 →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변경됩니다. (계약일 전환불가)
- 파생결합증권(사채)보유시 전환이 불가합니다.

7. 계약의 해지

- 만기 해지시: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자동 해지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현물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한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및 계좌 이전시: 현금화하여 해지 및 이전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증권 매도 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은 13시 이전 신청 시 당일 매도되며, 기준 시간 이후 신청시 요청일의 익영업일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핵심설명서

[한국투자ISA랩(PB적극/PB중립/PB안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서비스 개요

- 가입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제한: 신규가입 불가(랩서비스 전환으로만 가능)
- 의무가입기간: 5년(청년형 등 및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5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
- 최소가입금액: 1만원 이상(현물입고 불가) / 가입한도: 연 2천만원
- 중도해지: 가능
- 매매사전통보: SMS [종목 및 수량(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 증권은 금액)통보]
- 추가입금: 가능(최소가입금액 이상)/ 일부 출금: 불가
- 자산배분유형군: 복합자산
- 세부자산배분유형군:
한국투자ISA랩(PB적극): 적극투자형 / 한국투자ISA랩(PB중립): 위험중립형 / 한국투자ISA랩(PB안정): 안정추구형

2. 자산구성 및 투자 적합 고객

- 편입가능자산: 공모형 집합투자증권 (ETF포함), 파생결합증권(사채), REITS, RP,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본 서비스에는 예금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 투자 적합 고객: 본 서비스 중 한국투자ISA랩(PB적극)은 고위험 등급으로 적극투자형 이상의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 한국투자ISA랩(PB중립)은 중위험등급으로 위험중립형 이상의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 한국투자ISA랩(PB안정)은 저위험등급으로 안정추구형 이상의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가입 가능합니다.

3. 운용방법

- 본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외에 고객의 운용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운용하되, 회사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않습니다.

4. 운용주체

- 본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별로 운용합니다.

5. 수수료

유형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성과수수료
한국투자ISA랩(PB적극)	없음	연 0.5% (분기별 후취)	없음	없음
한국투자ISA랩(PB중립)		연 0.4% (분기별 후취)		
한국투자ISA랩(PB안정)		연 0.3% (분기별 후취)		

- *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 부과됩니다.
- *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랩 계약 변경(랩 서비스 전환)

- 고객의 투자성향 한도 내에서 랩 서비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 운용조건 변경 요청시 본사형 서비스로 전환되며 운용주체(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가 변경됩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보유시 전환이 불가합니다.

7. 계약의 해지

- 만기 해지시: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자동 해지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현물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한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및 계좌 이전시: 현금화하여 해지 및 이전 가능합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8.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

과세특례

- 계좌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현금화된 자산분만 해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1)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가입자: 250만원까지 비과세
 - 2)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3.5천만원 초과 가입자: 200만원까지 비과세
 - 3) 25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세제혜택 제외

- 의무가입기간 이전 해지시(중도 해지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및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계약 만기 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 통산 및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9. 위험 및 유의 사항

본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상품위험도 고위험 이상인 ETF, 주식형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됩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일임계좌에서 보유중인 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부 보유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또는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객께서 요청하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계좌별로 운용 관리되므로 동일시기에 가입한 계좌라고 하더라도 조기상환 또는 만기시 계좌간 수익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운용 특성상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섹터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지역 및 섹터의 특성, 집중투자 정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만약 본 서비스에서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 파생상품 ETF를 편입할 경우 복리효과 등에 따라서 추구하는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단기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랩 서비스의 투자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의 운용에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기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ELS등의 상품 편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 서비스 만기시 해당 금융상품을 해지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173조에 의거하여 주권상장회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은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영업점 직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가입 후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상황 등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아래의 상담직원, 고객센터(1544-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ruefriend.com)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핵심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계약권유문서 등 계약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상담직원직책:

연락처:

상담직원명:

(서명 또는 인)

201 년 월 일

한투 ISA 랩(본사적극/멀티) MP 설명서

1. 모델포트폴리오 개요

모델포트폴리오명	구조·특성	편입가능자산	위험도(투자자유형)
한국투자 ISA 랩 (본사적극/멀티)	위험자산 70%수준(최대 100%)으로 적극투자형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	펀드(ETF 포함), RP, 그외 현금성 자산	고위험(적극투자형)

* 가입 후 상기 모델포트폴리오 외 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투자 ISA 랩(PB 형)으로 랩서비스 전환을 통해 운용 가능합니다.

2. 모델포트폴리오 상세내역

상품군	상품	특징	비중		위험	위험도
			상품	상품군		
2 종	국내 주식형,혼합형, 기타펀드, ETF	국내 주식 또는 기타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17%	93%	고위험	4
	국내 채권형펀드, ETF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11%		저위험	2
	해외 주식형, 혼합형펀드, ETF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62%*		고위험	4
	MMF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3%		초저위험	1
1 종	RP	환매조건부 채권	5%	7%	초저위험	1
	예탁금	현금	2%		초저위험	1
합계			100%	MP 위험도	고위험 (3.5)	
위험자산(초고위험+고위험) 비중			79%			

* 상품비중이 30%초과하는 부분은 실제 상품 편입시 다수 상품에 분산해 투자예정임

※상품별 위험도는 현재 편입상품 기준이며, 편입상품 변경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변동가능

3.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 방식

- MP 에 편입한 금융상품별 투자위험도를 편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정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별 score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score
초고위험	5
고위험	4
중위험	3
저위험	2
초저위험	1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금융 상품군	금융상품	투자자유형-상품위험도				
		초고위험(5)	고위험(4)	중위험(3)	저위험(2)	초저위험(1)
1 종	예탁금					
	RP					
	예금					
2 종	국내 주식형, 혼합형, 기타 펀드, ETF					
	국내 채권형 펀드, ETF					
	해외 주식형, 혼합형 펀드, ETF					
	해외 채권형, 기타 펀드					
3 종	REITs					
	ELS, DLS					
	ELB, DLB					
	ETN					

※상기 명기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은 당사 각 상품담당부서의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과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위험도를 참고해 작성

※당사는 분기별 1 회 이상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예정

※위험도 분류기준은 시장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시장변화 등에 따라 위험도 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의 반영할 예정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에 따른 MP 위험도 분류기준

MP 위험도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기준
초고위험	4.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5.0
고위험	3.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4.5
중위험:	2.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3.5
저위험: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2.5
초저위험:	1.0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1.5

* 단, 시장상황에 따라 MP 위험도별 최소 가중평균 투자위험도는 제시된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보수 체계 : 일임운용 보수 + 편입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

- 일임운용보수 상세

유형구분	모델포트폴리오명	일임운용보수
적극투자형	한국투자 ISA 랩(본사적극/멀티)	0.5%(연, 분기후취)

- 주요 편입상품별 보수

구분	최대보수율		비고	
	판매보수	기타		
집합투자 증권	국내주식형	~0.9%	~0.7%	상품별 보수항목, 보수율, 징수시기, 징수방법 상이
	국내채권형	~0.3%	~0.2%	
	해외주식형	~1.1%	~1.0%	
	해외채권형	~1.0%	~1.0%	
	MMF	~0.3%	~0.2%	
파생결합 증권 (사채)	ELS	~0.8%	-	
	ELB	~0.3%	-	
	DLS	~0.6%	-	
	DLB	~0.4%	-	

* 상기 보수율은 주요 편입상품의 현재기준 보수율이며, 추후 편입상품 변동시 변동 가능

-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이 편입된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랩서비스 계약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은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상품의 특성,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으며,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감독당국의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동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이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는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나, 투자자가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한투 ISA 랩(본사적극/펀드) MP 설명서

1. 모델포트폴리오 개요

모델포트폴리오명	구조·특성	편입가능자산	위험도(투자자유형)
한국투자 ISA 랩 (본사적극/펀드)	위험자산 70%수준(최대 100%)으로 적극투자형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	펀드, 그외 현금성 자산	고위험(적극투자형)

* 가입 후 상기 모델포트폴리오 외 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투자 ISA 랩(PB 형)으로 랩서비스 전환을 통해 운용 가능합니다.

2. 모델포트폴리오 상세내역

상품군	상품	특징	비중		위험	위험도
			상품	상품군		
2 종	국내 주식형,혼합형, 기타펀드	국내 주식 또는 기타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17%	98%	고위험	4
	국내 채권형펀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11%		저위험	2
	해외 주식형, 혼합형펀드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62%*		고위험	4
	MMF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8%		초저위험	1
1 종	예탁금	현금	2%	2%	초저위험	1
합계			100%	MP 위험도	고위험 (3.5)	
위험자산(초고위험+고위험) 비중			79%			

* 상품비중이 30%초과하는 부분은 실제 상품 편입시 다수 상품에 분산해 투자예정임

※상품별 위험도는 현재 편입상품 기준이며, 편입상품 변경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변동가능

3.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 방식

- MP 에 편입한 금융상품별 투자위험도를 편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정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별 score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score
초고위험	5
고위험	4
중위험	3
저위험	2
초저위험	1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금융 상품군	금융상품	투자자유형-상품위험도				
		초고위험(5)	고위험(4)	중위험(3)	저위험(2)	초저위험(1)
1 종	예탁금					
	RP					
	예금					
2 종	국내 주식형, 혼합형, 기타 펀드, ETF					
	국내 채권형 펀드, ETF					
	해외 주식형, 혼합형 펀드, ETF					
	해외 채권형, 기타 펀드					
3 종	REITs					
	ELS, DLS					
	ELB, DLB					
	ETN					

※상기 명기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은 당사 각 상품담당부서의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과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위험도를 참고해 작성

※당사는 분기별 1 회 이상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예정

※위험도 분류기준은 시장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시장변화 등에 따라 위험도 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의 반영할 예정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에 따른 MP 위험도 분류기준

MP 위험도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기준
초고위험	4.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5.0
고위험	3.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4.5
중위험:	2.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3.5
저위험: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2.5
초저위험:	1.0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1.5

* 단, 시장상황에 따라 MP 위험도별 최소 가중평균 투자위험도는 제시된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보수 체계 : 일임운용 보수 + 편입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

- 일임운용보수 상세

유형구분	모델포트폴리오명	일임운용보수
적극투자형	한국투자 ISA 랩(본사적극/펀드)	0.5%(연, 분기후취)

- 주요 편입상품별 보수

구분	최대보수율		비고
	판매보수	기타	
집합투자 증권	국내주식형	~0.9%	상품별 보수항목, 보수율, 징수시기, 징수방법 상이
	국내채권형	~0.3%	
	해외주식형	~1.1%	
	해외채권형	~1.0%	
	MMF	~0.3%	
파생결합 증권 (사채)	ELS	~0.8%	-
	ELB	~0.3%	-
	DLS	~0.6%	-
	DLB	~0.4%	-

* 상기 보수율은 주요 편입상품의 현재기준 보수율이며, 추후 편입상품 변동시 변동 가능

-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이 편입된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랩서비스 계약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은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상품의 특성,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으며,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감독당국의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동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이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는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나, 투자자가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한투 ISA 랩(본사중립/멀티) MP 설명서

1. 모델포트폴리오 개요

모델포트폴리오명	구조·특성	편입가능자산	위험도(투자자유형)
한국투자 ISA 랩 (본사중립/멀티)	위험자산 35%수준(최대 50%)으로 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	펀드(ETF 포함), RP, 그 외 현금성 자산	중위험(위험중립형)

* 가입 후 상기 모델포트폴리오 외 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투자 ISA 랩(PB 형)으로 랩서비스 전환을 통해 운용 가능합니다.

2. 모델포트폴리오 상세내역

상품군	상품	특징	비중		위험	위험도
			상품	상품군		
2 종	국내 주식형,혼합형, 기타펀드, ETF	국내 주식 또는 기타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10%	68%	고위험	4
	국내 채권형펀드, ETF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25%*		저위험	2
	해외 주식형, 혼합형펀드, ETF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30%		고위험	4
	MMF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3%		초저위험	1
1 종	RP	환매조건부 채권	30%	32%	초저위험	1
	예탁금	현금	2%		초저위험	1
합계			100%	MP 위험도	중위험 (2.5)	
위험자산(초고위험+고위험) 비중			40%			

* 상품비중이 30%초과하는 부분은 실제 상품 편입시 다수 상품에 분산해 투자예정임

※상품별 위험도는 현재 편입상품 기준이며, 편입상품 변경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변동가능

3.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 방식

- MP 에 편입한 금융상품별 투자위험도를 편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정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별 score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score
초고위험	5
고위험	4
중위험	3
저위험	2
초저위험	1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금융 상품군	금융상품	투자자유형-상품위험도				
		초고위험(5)	고위험(4)	중위험(3)	저위험(2)	초저위험(1)
1 종	예탁금					
	RP					
	예금					
2 종	국내 주식형, 혼합형, 기타 펀드, ETF					
	국내 채권형 펀드, ETF					
	해외 주식형, 혼합형 펀드, ETF					
	해외 채권형, 기타 펀드					
3 종	REITs					
	ELS, DLS					
	ELB, DLB					
	ETN					

※상기 명기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은 당사 각 상품담당부서의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과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위험도를 참고해 작성

※당사는 분기별 1 회 이상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예정

※위험도 분류기준은 시장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시장변화 등에 따라 위험도 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의 반영할 예정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에 따른 MP 위험도 분류기준

MP 위험도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기준
초고위험	4.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5.0
고위험	3.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4.5
중위험:	2.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3.5
저위험: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2.5
초저위험:	1.0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1.5

* 단, 시장상황에 따라 MP 위험도별 최소 가중평균 투자위험도는 제시된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보수 체계 : 일임운용 보수 + 편입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

- 일임운용보수 상세

유형구분	모델포트폴리오명	일임운용보수
위험중립형	한국투자 ISA 랩(본사중립/멀티)	0.4%(연, 분기후취)

- 주요 편입상품별 보수

구분	최대보수율		비고	
	판매보수	기타		
집합투자 증권	국내주식형	~0.9%	~0.7%	상품별 보수항목, 보수율, 징수시기, 징수방법 상이
	국내채권형	~0.3%	~0.2%	
	해외주식형	~1.1%	~1.0%	
	해외채권형	~1.0%	~1.0%	
	MMF	~0.3%	~0.2%	
파생결합 증권 (사채)	ELS	~0.8%	-	
	ELB	~0.3%	-	
	DLS	~0.6%	-	
	DLB	~0.4%	-	

* 상기 보수율은 주요 편입상품의 현재기준 보수율이며, 추후 편입상품 변동시 변동 가능

-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이 편입된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랩서비스 계약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은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상품의 특성,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으며,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감독당국의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동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이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는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나, 투자자가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한투 ISA 랩(본사중립/펀드) MP 설명서

1. 모델포트폴리오 개요

모델포트폴리오명	구조·특성	편입가능자산	위험도(투자자유형)
한국투자 ISA 랩 (본사중립/펀드)	위험자산 35%수준(최대 50%)으로 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	펀드, 그외 현금성 자산	중위험(위험중립형)

* 가입 후 상기 모델포트폴리오 외 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투자 ISA 랩(PB 형)으로 랩서비스 전환을 통해 운용 가능합니다.

2. 모델포트폴리오 상세내역

상품군	상품	특징	비중		위험	위험도
			상품	상품군		
2 종	국내 주식형,혼합형, 기타펀드	국내 주식 또는 기타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10%	98%	고위험	4
	국내 채권형펀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25%*		저위험	2
	해외 주식형, 혼합형펀드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30%		고위험	4
	MMF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33%*		초저위험	1
1 종	예탁금	현금	2%	2%	초저위험	1
합계			100%	MP 위험도	중위험 (2.5)	
위험자산(초고위험+고위험) 비중			40%			

* 상품비중이 30%초과하는 부분은 실제 상품 편입시 다수 상품에 분산해 투자예정임

※상품별 위험도는 현재 편입상품 기준이며, 편입상품 변경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변동가능

3.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 방식

- MP 에 편입한 금융상품별 투자위험도를 편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정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별 score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score
초고위험	5
고위험	4
중위험	3
저위험	2
초저위험	1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금융 상품군	금융상품	투자자유형-상품위험도				
		초고위험(5)	고위험(4)	중위험(3)	저위험(2)	초저위험(1)
1 종	예탁금					
	RP					
	예금					
2 종	국내 주식형, 혼합형, 기타 펀드, ETF					
	국내 채권형 펀드, ETF					
	해외 주식형, 혼합형 펀드, ETF					
	해외 채권형, 기타 펀드					
3 종	REITs					
	ELS, DLS					
	ELB, DLB					
	ETN					

※상기 명기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은 당사 각 상품담당부서의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과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위험도를 참고해 작성

※당사는 분기별 1 회 이상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예정

※위험도 분류기준은 시장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시장변화 등에 따라 위험도 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의 반영할 예정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에 따른 MP 위험도 분류기준

MP 위험도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기준
초고위험	4.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5.0
고위험	3.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4.5
중위험:	2.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3.5
저위험: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2.5
초저위험:	1.0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1.5

* 단, 시장상황에 따라 MP 위험도별 최소 가중평균 투자위험도는 제시된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보수 체계 : 일임운용 보수 + 편입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

- 일임운용보수 상세

유형구분	모델포트폴리오명	일임운용보수
위험중립형	한국투자 ISA 랩(본사중립/펀드)	0.4%(연, 분기후취)

- 주요 편입상품별 보수

구분	최대보수율		비고	
	판매보수	기타		
집합투자 증권	국내주식형	~0.9%	~0.7%	상품별 보수항목, 보수율, 징수시기, 징수방법 상이
	국내채권형	~0.3%	~0.2%	
	해외주식형	~1.1%	~1.0%	
	해외채권형	~1.0%	~1.0%	
	MMF	~0.3%	~0.2%	
파생결합 증권 (사채)	ELS	~0.8%	-	
	ELB	~0.3%	-	
	DLS	~0.6%	-	
	DLB	~0.4%	-	

* 상기 보수율은 주요 편입상품의 현재기준 보수율이며, 추후 편입상품 변동시 변동 가능

-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이 편입된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랩서비스 계약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은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상품의 특성,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으며,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감독당국의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동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이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는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나, 투자자가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한투 ISA 랩(본사안정/멀티) MP 설명서

1. 모델포트폴리오 개요

모델포트폴리오명	구조·특성	편입가능자산	위험도(투자자유형)
한국투자 ISA 랩 (본사안정/멀티)	위험자산 10%수준(최대 30%)으로 안정추구형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	펀드(ETF 포함), RP, 그 외 현금성 자산	저위험(안정추구형)

* 가입 후 상기 모델포트폴리오 외 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투자 ISA 랩(PB 형)으로 랩서비스 전환을 통해 운용 가능합니다.

2. 모델포트폴리오 상세내역

상품군	상품	특징	비중		위험	위험도
			상품	상품군		
2 종	국내 채권형펀드, ETF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60%*	68%	저위험	2
	MMF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8%		초저위험	1
1 종	RP	환매조건부 채권	30%	32%	초저위험	1
	예탁금	현금	2%		초저위험	1
합계			100%	MP 위험도	저위험 (1.6)	
위험자산(초고위험+고위험) 비중			0%			

* 상품비중이 30%초과하는 부분은 실제 상품 편입시 다수 상품에 분산해 투자예정임

※상품별 위험도는 현재 편입상품 기준이며, 편입상품 변경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변동가능

3.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 방식

- MP 에 편입한 금융상품별 투자위험도를 편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정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별 score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score
초고위험	5
고위험	4
중위험	3
저위험	2
초저위험	1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금융 상품군	금융상품	투자자유형-상품위험도				
		초고위험(5)	고위험(4)	중위험(3)	저위험(2)	초저위험(1)
1 종	예탁금					
	RP					
	예금					
2 종	국내 주식형, 혼합형, 기타 펀드, ETF					
	국내 채권형 펀드, ETF					
	해외 주식형, 혼합형 펀드, ETF					
	해외 채권형, 기타 펀드					
3 종	REITs					
	ELS, DLS					
	ELB, DLB					
	ETN					

※상기 명기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은 당사 각 상품담당부서의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과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위험도를 참고해 작성

※당사는 분기별 1 회 이상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예정

※위험도 분류기준은 시장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시장변화 등에 따라 위험도 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의 반영할 예정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에 따른 MP 위험도 분류기준

MP 위험도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기준
초고위험	4.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5.0
고위험	3.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4.5
중위험:	2.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3.5
저위험: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2.5
초저위험:	1.0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1.5

* 단, 시장상황에 따라 MP 위험도별 최소 가중평균 투자위험도는 제시된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보수 체계 : 일임운용 보수 + 편입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

- 일임운용보수 상세

유형구분	모델포트폴리오명	일임운용보수
안정추구형	한국투자 ISA 랩(본사안정/멀티)	0.3%(연, 분기후취)

- 주요 편입상품별 보수

구분	최대보수율		비고	
	판매보수	기타		
집합투자 증권	국내주식형	~0.9%	~0.7%	상품별 보수항목, 보수율, 징수시기, 징수방법 상이
	국내채권형	~0.3%	~0.2%	
	해외주식형	~1.1%	~1.0%	
	해외채권형	~1.0%	~1.0%	
	MMF	~0.3%	~0.2%	
파생결합 증권 (사채)	ELS	~0.8%	-	
	ELB	~0.3%	-	
	DLS	~0.6%	-	
	DLB	~0.4%	-	

* 상기 보수율은 주요 편입상품의 현재기준 보수율이며, 추후 편입상품 변동시 변동 가능

-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이 편입된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랩서비스 계약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은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상품의 특성,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으며,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감독당국의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동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이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는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나, 투자자가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한투 ISA 랩(본사안정/펀드) MP 설명서

1. 모델포트폴리오 개요

모델포트폴리오명	구조·특성	편입가능자산	위험도(투자자유형)
한국투자 ISA 랩 (본사안정/펀드)	위험자산 10%수준(최대 30%)으로 안정추구형 고객에게 적합하게 운용	펀드, 그 외 현금성 자산	저위험(안정추구형)

* 가입 후 상기 모델포트폴리오 외 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투자 ISA 랩(PB 형)으로 랩서비스 전환을 통해 운용 가능합니다.

2. 모델포트폴리오 상세내역

상품군	상품	특징	비중		위험	위험도
			상품	상품군		
2 종	국내 채권형펀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60%*	98%	저위험	2
	MMF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38%*		초저위험	1
1 종	예탁금	현금	2%	2%	초저위험	1
합계			100%	MP 위험도	저위험 (1.6)	
위험자산(초고위험+고위험) 비중			0%			

* 상품비중이 30%초과하는 부분은 실제 상품 편입시 다수 상품에 분산해 투자예정임

※상품별 위험도는 현재 편입상품 기준이며, 편입상품 변경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변동가능

3.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출 방식

- MP 에 편입한 금융상품별 투자위험도를 편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산정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별 score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score
초고위험	5
고위험	4
중위험	3
저위험	2
초저위험	1

-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금융 상품군	금융상품	투자자유형-상품위험도				
		초고위험(5)	고위험(4)	중위험(3)	저위험(2)	초저위험(1)
1 종	예탁금					
	RP					
	예금					
2 종	국내 주식형, 혼합형, 기타 펀드, ETF					
	국내 채권형 펀드, ETF					
	해외 주식형, 혼합형 펀드, ETF					
	해외 채권형, 기타 펀드					
3 종	REITs					
	ELS, DLS					
	ELB, DLB					
	ETN					

※상기 명기된 금융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은 당사 각 상품담당부서의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과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위험도를 참고해 작성

※당사는 분기별 1 회 이상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예정

※위험도 분류기준은 시장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시장변화 등에 따라 위험도 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의 반영할 예정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에 따른 MP 위험도 분류기준

MP 위험도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기준
초고위험	4.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5.0
고위험	3.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4.5
중위험:	2.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3.5
저위험: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2.5
초저위험:	1.0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1.5

* 단, 시장상황에 따라 MP 위험도별 최소 가중평균 투자위험도는 제시된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보수 체계 : 일임운용 보수 + 편입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

- 일임운용보수 상세

유형구분	모델포트폴리오명	일임운용보수
안정추구형	한국투자 ISA 랩(본사안정/펀드)	0.3%(연, 분기후취)

- 주요 편입상품별 보수

구분	최대보수율		비고	
	판매보수	기타		
집합투자 증권	국내주식형	~0.9%	~0.7%	상품별 보수항목, 보수율, 징수시기, 징수방법 상이
	국내채권형	~0.3%	~0.2%	
	해외주식형	~1.1%	~1.0%	
	해외채권형	~1.0%	~1.0%	
	MMF	~0.3%	~0.2%	
파생결합 증권 (사채)	ELS	~0.8%	-	
	ELB	~0.3%	-	
	DLS	~0.6%	-	
	DLB	~0.4%	-	

* 상기 보수율은 주요 편입상품의 현재기준 보수율이며, 추후 편입상품 변동시 변동 가능

-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사채)이 편입된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랩서비스 계약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은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상품의 특성,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으며,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 감독당국의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동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이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는 투자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나, 투자자가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